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78
----------	-------

발의연월일 : 2025. 11. 6.

발 의 자 : 남인순 · 김남근 · 김 윤
허성무 · 김남희 · 권향엽
백혜련 · 서미화 · 전진숙
이주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을 받는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자녀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단순히 출산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도의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서 출산한 때로 앞당기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가의 책

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출산”을 “출산·양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입양한 때에는 그 자녀를 출산·입양한 날(자녀를 출산·입양한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양육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입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제19조(<u>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 가 산입</u>) ① <u>자녀가 있는 가입 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 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 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u>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 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 2.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 원은 국가가 <u>전부 또는 일부</u>를 부담한다. ④ (생 략)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제19조(<u>출산 · 양육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u>) ① <u>가입자 또 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 산 · 입양한 때에는 그 자녀를 출산 · 입양한 날(자녀를 출산 · 입양한 이후 최초로 가입자 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u>-----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전부</u>-----. ④ (현행과 같음)